

농민권리선언포럼
2021. 10. 5(화)

농민권리선언포럼

- 제5차 회의 -

2021. 10. 5(화) 15~17시,
농특위 사무국 대회의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민권리선언포럼 제5차 회의 개최(안)

1. 개요

□ (목적) 유엔농민권리선언의 공론화 및 농민권리 보장 방안 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현장토론회 후속 등 향후 활동계획 논의

□ (일시/장소) '21. 10. 5(화) 15~17시 / 농특위 사무국 대회의실*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82, 16층(에스타워)

□ (참석대상) 포럼 대표 및 위원, 사무국 직원 등 20명 내외

2. 세부 일정

일 정	주 요 내 용	비 고
15:00~15:10 (10')	○ 인사말씀 및 활동경과 보고	김정열 대표
15:10~15:30 (20')	○ (발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	이수미 책임연구원
15:30~16:00 (30')	○ (논의) 정책연구용역 세부사항 논의	김정열 대표
16:00~16:10 (10')	휴식	
16:10~16:20 (10')	○ (발표) 향후활동계획(현장토론회 등)	송원규 간사
16:20~16:50 (30')	○ (논의) 향후활동 세부계획 논의·확정	김정열 대표
16:50~17:00 (10')	○ 종합정리 및 폐회	김정열 대표

* 회의 시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목 차



I. [보고] 농민권리선언포럼 활동경과	1
• 김정열 농민권리선언포럼 대표	
○ 제4차 회의결과	1
II. [발표/논의]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	8
•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	
III. [발표/논의] 현장포럼 후속 및 향후 계획	29
• 김정열 농민권리선언포럼 대표	
○ 산업단지 추진 관련 의견서	29
○ 세계인권도시포럼 등 제6차 회의 계획	32

「농민권리선언포럼」 현장토론회(제4차 회의) 개최결과

□ 개요

- 목적: 농민권리(선언) 관점에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사업의 결정과정에서 농민권리 보장 방안 모색
- 주제: 농촌의 자원을 이용한 개발에서 농민의 참여와 권리
- 일시: 2021. 9. 2.(목) 14:00~16:30 (2시간 30분)
- 장소: 괴산 사리면복지회관 세미나실(충북 괴산군)
 - * 방역수칙을 고려하여 유튜브 화상중계, Zoom 참여 병행
- 참석: 사업대상지역의 권리침해 농민, 포럼 위원 등 26명

구분	시간	분	주요 내용	비고
개회	14:00~14:10	10	○ 개회: 김정열(포럼 대표)	사회: 송원규 간사
주제 발표	14:10~14:30	20	○ 진천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농민권리 침해	발표: 김기형 회장 (진천군농민회)
	14:30~14:50	20	○ 괴산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농민권리 침해	발표: 송요일 공동대표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반대대책위원회)
정리	14:50~15:00	10	휴식	
토론 질의 응답	15:00~16:15	75	○ 좌장: 구점숙 위원장(경상남도 농특위 농어민인권분과) ○ 지정토론(30분): 하승수 대표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괴산군 산업단지 담당자 ○ 현장토론(45분): 마을이장 등 포럼 참석자	
폐회	16:15~16:30	15	○ 종합정리 및 폐회	좌장 및 사회

□ 주요 논의내용

- 지정토론(하승수 대표변호사)

① 산업단지(이하 산단)의 문제

- 상반기 기준 1,242개 산단이 있음. 충남북에서는 지자체장 중심으로 조성하려고 함. 분양되는 것과 입주해서 가동되는 것이 다름. 국가 산단의 가동률이 70%, 현재는 80% 정도임. 지방산단 경우는 조사가 필요함.

- 충북은 현재 15개이며 추가로 조성하려고 함. 국민들은 산업단지로 가면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것으로 생각하나 지방 산단의 대부분은 민간기업이 제안, 지자체가 승인하면 추진됨. 사업주체가 민간기업이며 토지소유자의 50% 동의하면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음. 농촌마을을 파괴하고 농지를 강제수용하는 주체가 민간기업이라는 것임.
- 진천의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SBS를 지배하는 태영건설은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민간기업이며 돈벌이 사업으로 하고 있음. 농지를 강제수용해서 비싼 가격으로 분양하는 땅장사를 지자체가 도와주고 있는 것임.
- 증평군의 도안면은 제2농공단지 추진,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되었으며 강제수용만 남았음. 마을에서는 강제 수용되는 시점에 알게 되었고 공청회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알지 못했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산업단지의 긍정성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지방산단은 기업이 땅장사를 하려는 것임. 진천의 경우는 태영건설, 괴산은 SK와 토우건설임. 괴산의 경우는 괴산군 24%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산단을 조성하는데 국비가 500억 이상, 괴산이 27억의 군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괴산군의 세금과 국민의 세금까지 지원해서 산단을 만드는데 이익은 민간기업에 돌아가는 것으로 기업들을 도와주는 것임.
- 경남지역 사례로 경남서부단지 민간기업에서 제안하여 산단으로 지정 되었으나 기업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태양광 발전으로 하게 되었고, 절대농지 포함하여 손쉽게 대규모 땅을 확보하고 사업이 엉뚱한 용도로 편법으로 이어지게 됨.

② 농지 전용

- 산업단지로 인해서 농지 전용 규모가 많아지고 있음. 택지 개발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자세한 조사가 필요함.

③ 절차의 비민주성

- 민간업자가 제안서를 내고 산업단지로 추진된다면 추진단계에서 개발 행위 허가보유, 확정적인 것 같으나 주민들의 의견 들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민간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짐.

- 지역주민들의 반대 의견은 거의 반영이 되지 않으며 사업의 주체가 민간이고, 주민들은 의견을 내도 어디에 내야 할지 모르고 있는 현실임.

① 농민의 인권, 권리 측면에서 바라본 산업단지

- UN농민권리선언 10조에 참여권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음. 농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에 대해서는 참여권 보장해야 함.
- 폐기물은 안 되며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됨. 세계적으로 합의된 내용으로 산업단지나 폐기물 추진에 관한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음.
- 산단과 매립지 추진 사례가 충북지역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산업폐기물의 종류도 충북지역 지정 폐기물에는 폐유 등 유해성분이 많으며 이것은 농촌 지역을 매립하겠다는 것임.
- 충남 당진에는 폐기물매립장 들어서 있음. 안전하다고 하나 현대제철 자체 매립장에서 최근 주변 지하수에 유해물질이 나오는지 측정하는데 유독성 물질 검출되었고, 매립장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됨. 주민감시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밝혀짐. 원칙대로 하게 되면 매립물을 파내고 보수공사를 해야 함. 현대제철에 대해서는 6개월 정지시킴.
- 충북 제천은 오염수 매립장, 농지나 하천, 저수지 오염과 연결됨.
- 산업폐기물은 오염이 심각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면 안 되며 공공이 해야 사고 발생시 대처할 수 있음.
- 최근 일본 산업폐기물 연구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나 영리기업이 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어느 정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기업이 하고 있고 최근에 산단과 결합하여 하려고 하는 편법이 일어나고 있음.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법으로 30년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연구자에 따르면 100년은 더 해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함. 30년으로 한 근거가 없으며 객관적 기준이 아님.
- 산업폐기물 매립 문제는 민간기업에 맡겨서는 안 되고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

⑤ 이후 방향

- 농업진흥지역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것으로 진천은 상징적인 지역이며 괴산은 무분별한 개발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의미있는 지역임. 공론화

와 여론화가 필요함.

- 제도 개선의 측면에서는 ① 산업단지에 관한 법제도의 개선, ② 폐기물 처리에 관한 제도 개선 ③ 농지보존 방안에 대한 연구 토론이 필요함.

○ 토론회 참여자 발언

① 대기마을 김용자 이장

- 우리나라 정부에서 농업농촌농민을 대하는 태도가 산업단지 개발사례를 통해 보여짐. 농지를 파괴하고 농민을 내몰고 있음. 대상지 중에 종종 땅이 많고 보호해야 할 것이 있음에도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음.
- 더 중요한 것은 지정폐기물은 수백 년이 갈 수도 있으며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함. 농지 깊숙이 파고들어 후손들이 뿌리내릴 수 없게 만들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부정하는 것임.
- 절차상의 문제도 심각함. 21세기에 일어날 일이 아님. 지자체장의 횡포와 폭정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음. 지역 주민들 사이의 분열을 일으켜 평생 상처가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되고 우리 마을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음.

② 중흥마을 류임걸 이장

- 괴산에 벌어지는 것은 괴산군수의 횡포임. 지역주민들이 자원이 부족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있음. 토지편입만 하면 된다는 과정에서 지금도 오늘도 공무원을 동원해 가정 방문하면서 괴산군민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토지주들을 만나고 대책위나 이장을 만나지 않고 있음. 지역민을 몰아내려는 군수의 횡포가 진행되고 있음. 우리 군수가 아니고 개발업자의 하수인과 같음. 면장을 통해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현혹시키고 있음. 사업자가 해야 할 일을 대행하고 있음.
- 너무 억울하고 앞으로 백지화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

③ 신송규 괴산군의원

- 의원 간담회를 가지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제기했으며 중점적인 내용은 수질오염을 포함한 환경 때문에 반대하고 있음.
-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군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를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공단이 과산에 있어도 분양권이 있어 주소를 옮기지 않음.

- 우춘식 위원장님이 의료 폐기물 때문에 원주 환경부를 갔다 오셨다고 함. 적합판정을 내린 것임. 환경부로 간 것임.
- 산업폐기물도 사리주민들의 환경이 악화되면 안 되는 것으로 반대하면서 환경부에 이야기하고 군에서도 직접 나서 해야 함. 군과 민간이 합동으로 대응하는 이야기를 함.

④ 우춘식 전 주민자치위원장

- 산업단지가 사리면민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고 있음. 지금보다 좋아지지 않을 미래가 걱정되어 반대하고 있음. 군수가 공무원을 동원하여 민민 갈등을 일으키고 있음.

⑤ 박종서 농특위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위원

- 2002년 경기도 팔당으로 귀농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2009년 팔당지역에 대해서 당시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사업에 110명의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의 땅이 수용됨. 팔당지역은 30년 동안 유기농산물을 매개로 소비자와의 연대가 이루어진 곳임. 자전거도로 등으로 16만 평의 농지가 수용되는 상황이 되었음. 하천부지의 농지를 지키기 위해 싸웠으나 일부는 수용되었고 두물머리는 개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으로 3년 3개월 동안의 투쟁이 마무리됨.
- 투쟁과정에서의 힘은 시민단체와 천주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가 함께 한 것이었음. 농지를 지키고자 농촌, 고향을 지키려는 가치들을 많은 시민과 소비자들에게 알리면서 연대를 해야 이길 수 있음. 여러 단체들과 이런 가치들을 알려 나가면서 연대하면 좋겠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겠음.

⑥ 서봉석 농특위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위원

-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해 나가야 함.

⑦ 조태희 농특위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위원

- 산업단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존

의 것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 국가적으로도 손해임. 개발된 곳에 대한 활용 방안을 같이 고민하여 더 이상 개발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고민해 보아야 함.

⑧ 박경철 농특위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위원

- 농민권리선언과 관련된 것으로 농민권리선언이 유엔에서 선포, 국제 협약까지는 아니나 국가가 준수하도록 권장, 권고하는 수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는 끝까지 기권함. 농식품부와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토지 문제, 종자, 환경 등의 문제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반영되지 않고 있음.
- 괴산군 사례에서 토지수용위원회 결과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허용이 된다면 합당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마을과 공동체가 직결된 것으로 토지만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현장토론이 처음이나 토지 난민은 전국적 현상으로 낮은 농지 가격은 자본이 먹기 좋을 것, 농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임.

⑨ 윤병선 농특위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위원

- 충북도 슬로건에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고 나와 있음. 민간기업에게 토지이용과 관련된 토지 처분 권한이 온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음. 농민권리 전에 재산권도 있고, 과거에 개발주의 당시에 만들어진 법률 체계까지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모습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현장에 농민들이 연대하고 싸우라는 것 외에 농특위가 주관했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심. 헌법 소원 등을 포함하여 농촌 주민들에게 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벌어지는 다양한 침해와 피해 사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오늘 이야기 바탕으로 대통령 직속기구로 농특위의 역할이 필요할 것임.

□ 금후계획

- 농특위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차원의 성명서 발표 등 후속사업을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토론회 사진>



유엔농민권리선언 공론화 및 농민권리 보장방안 연구

중 간 보 고 회 발 표 자 료



차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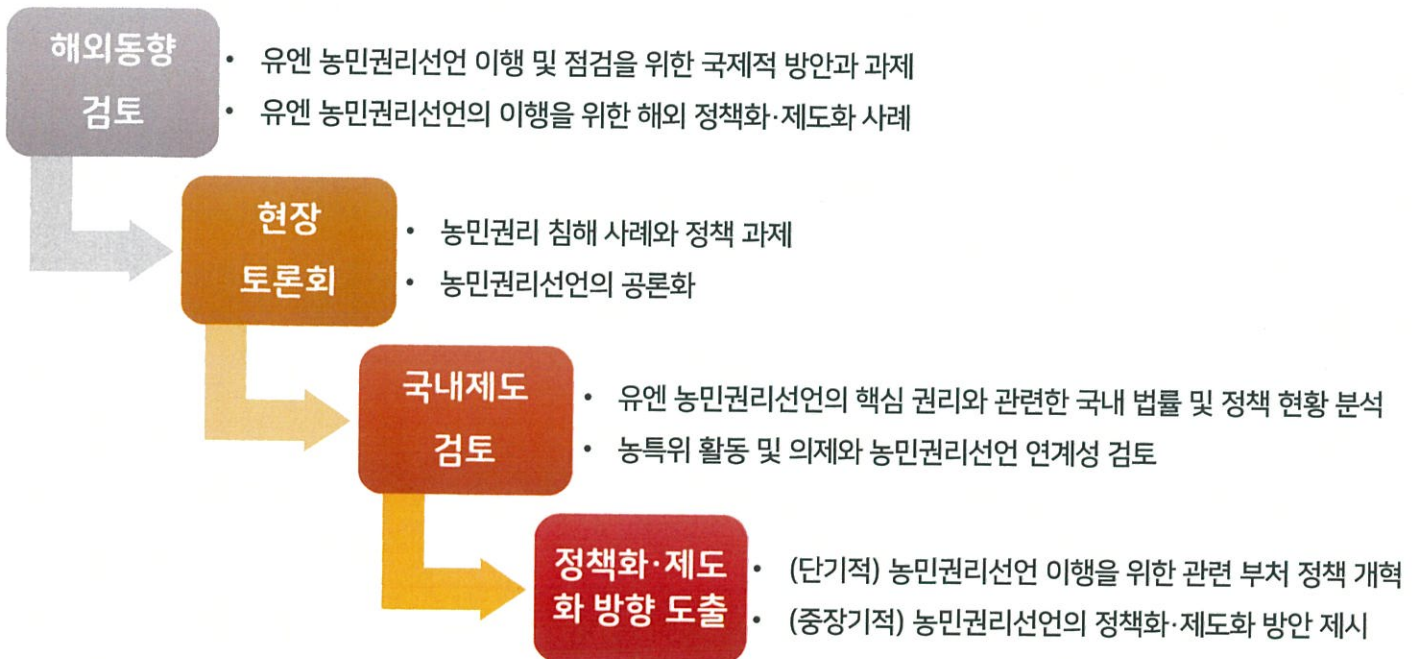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유엔 농민권리선언의 정책적·제도적 함의
3. 해외 각국 및 국제 이행 동향
4. 최종보고회까지 연구 계획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내용적 범위와 절차

정책화·제도화를 위한 국내외 동향 검토 및 현장의견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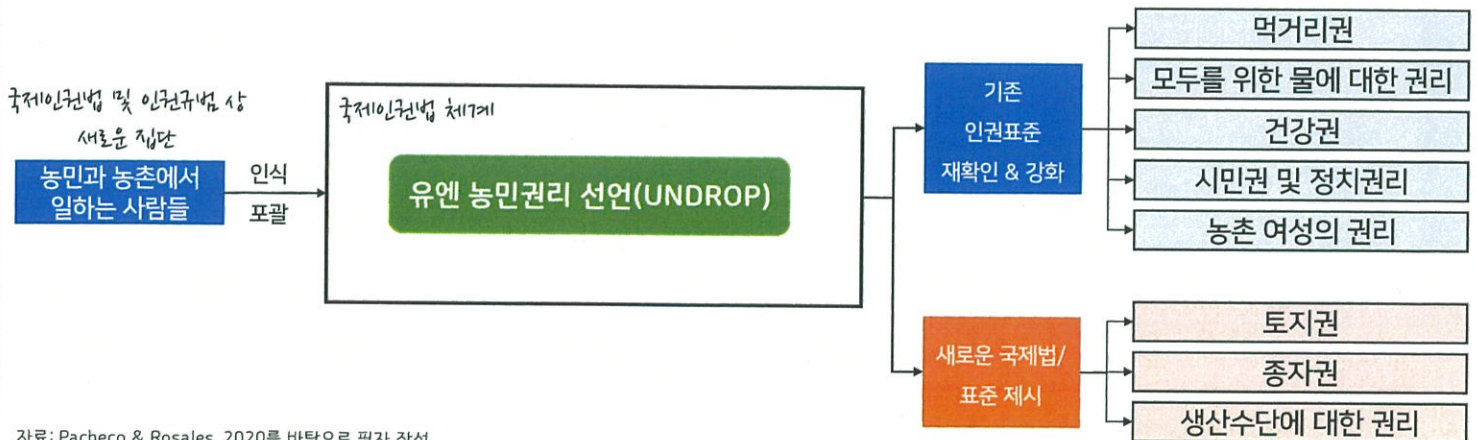
유엔 농민권리 선언의 정책적·제도적 함의

1. 유엔 농민권리선언과 국제인권법

권리담지자로서 농민 집단의 인식과 국제적으로 동의하는 인권 표준의 제시

유엔 농민권리선언의 국제 인권법에 대한 기여

- ⦿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권리담지자(right-holders)로서 인식
- ⦿ 하나의 집약적 문서 안에 국제적으로 동의하는 농민 권리 국제 표준 제시



자료: Pacheco & Rosales, 2020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1. 유엔 농민권리선언과 국제인권법

권리담지자로서 농민 집단의 인식과 국제적으로 동의하는 인권 표준의 제시

✍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인식(Pacheco & Rodriguez, 2020: 30) → 하나의 집약적 문서

- ① 유엔농민권리선언은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새로운 집단을 권리담지자(right-holders)로서 국제적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
 - * 인권의 영역에서 이들 집단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농민과 농업 노동자를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과 관련하여 FAO와 ILO에서 이뤄졌던 상당한 진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음
 - * 선언은 농촌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인권 전반을 다루면서 국가가 이러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존중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규정
 - * 특히, 소규모 농민 뿐 아니라 작물 재배, 가축 사육, 목축, 어로, 삼림 관리, 채집과 수렵, 제조 및 가공 관련 수공업 등 관련 노동자들을 권리의 담지자로 포함
 - * 더불어 이러한 활동을 하는 토착민 집단과 지역 공동체에 대한 인정도 담고 있음

1. 유엔 농민권리선언과 국제인권법

권리담지자로서 농민 집단의 인식과 국제적으로 동의하는 인권 표준의 제시

✍ 세계 곳곳의 농촌 지역 거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

- ①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농촌 거주민의 70%는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음(Castañeda et al., 2018)
- ① 40%의 극심한 농촌 빈곤층은 삼림 지대나 사바나 초원에 거주하고, 목축민의 85%는 빈곤 선(하루 1.9달러 미만으로 생활) 아래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음(FAO, 2019)
- ① 또한, 농업 임금 노동자의 상당수가 극심한 빈곤을 겪고 있으며, 농촌에서도 여성과 아동이 가장 취약한 집단임
- ① 선언문은 농촌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소외된 이들 집단과 이들이 기후변화 등에 직면해 겪는 새로운 도전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음

1. 유엔 농민권리선언과 국제인권법

권리담지자로서 농민 집단의 인식과 국제적으로 동의하는 인권 표준의 제시

농민의 중요한 사회적 기여에 대한 재조명

- ① 농업 생물다양성 보전과 먹거리의 생산/공급자로서 농민의 사회적 역할
- ② 사회적·문화적 발전에서 농촌 거주민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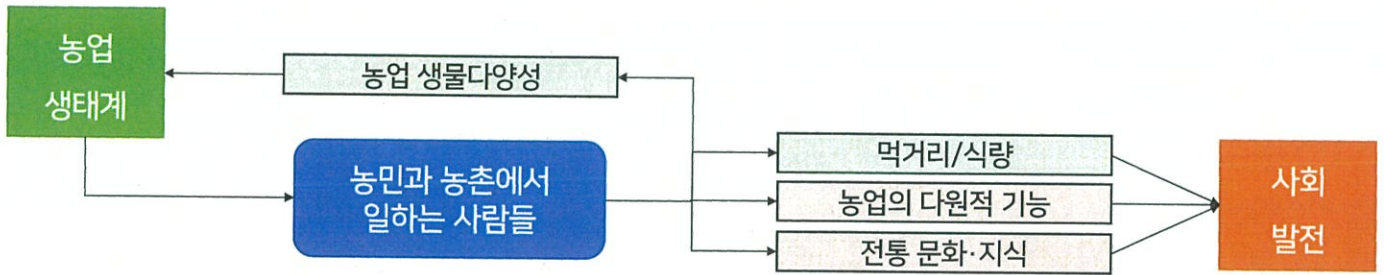


그림: 필자 작성.

2. 유엔 농민권리선언을 통한 국제인권법 상의 권리 강화

기존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 상의 권리 재확인·강화

기존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 상의 권리 재확인 및 강화

- ① 유엔 농민권리선언은 다양한 유엔 협약과 FAO, ILO의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되는 인권 규범 및 표준을 재확인함으로써 이들 권리를 강화
- ②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엔 협약에 담긴 인권/권리를 재확인
 -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965)
 -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
 -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
 - * 여성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

2. 유엔 농민권리선언을 통한 국제인권법 상의 권리 강화

기존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 상의 권리 재확인·강화

기존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 상의 권리 재확인 및 강화

⊕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엔 협약에 담긴 인권/권리를 재확인(계속)

- *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984)
-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 *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1990)
-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2006)
-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6)

2. 유엔 농민권리선언을 통한 국제인권법 상의 권리 강화

기존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 상의 권리 재확인·강화

기존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 상의 권리 재확인 및 강화

⊕ 또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FAO와 ILO의 국제 합의 문서에 기반

- *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 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 *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
- * ILO 농업근로자 단체에 관한 협약(ILO Rural Workers' Organisations Convention, No. 141, 1975)
- * ILO 토착민과 부족민 협약(ILO Convention on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No. 169, 1989)
- * 농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약(ILO Safety and Health in Agriculture Convention, No. 184, 2001)

2. 유엔 농민권리선언을 통한 국제인권법 상의 권리 강화

기존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 상의 권리 재확인·강화

기존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 상의 권리 재확인 및 강화

① 또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FAO와 ILO의 국제 합의 문서에 기반(계속)

- * ILO 어선원 노동협약(ILO Working in Fishing Convention, No. 188, 2016)
- * FAO 먹거리 보장과 빈곤 퇴치의 맥락에서 본 지속 가능한 소규모 어업 확보를 위한 자발적 지침(FAO Voluntary Guidelines for Securing Sustainable Small-scale Fisheries in the Context of Food Security and Poverty Eradication, 2015)
- * FAO 국가 먹거리 보장의 맥락에서 적절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의 점진적 실현을 지지하는 자발적 지침(FAO Voluntary Guidelines in support of the progressiv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adequate food in the context of national food security, 2004)
- * 세계 먹거리 보장 위원회와 FAO의 국가 먹거리 보장의 맥락에서 토지, 수산, 산림 소유권의 책임있는 정책에 관한 자발적 지침(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and FAO Voluntary Guidelines on the Responsible Governance of Tenure of Land, Fisheries and Forests in the Context of National Food Security, 2012)

2. 유엔 농민권리선언을 통한 국제인권법 상의 권리 강화

기존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 상의 권리 재확인·강화

유엔 농민권리선언과 적절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right to adequate food)

- ① 선언문 제15조는 농촌에 살며 일하는 사람들의 먹거리 보장에 대한 기여와 먹거리 파동에 대한 취약성 양 측면을 다루고 있음
- ② 지구적, 국가적 수준에서 소수 기업에 권력이 집중된 먹거리 체계는 소규모 농민의 생계와 자율성을 침해
- ③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먹거리 체계를 위한 공공정책 수립 강조
 - * 선언문 제15조에서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적절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 먹거리 보장 및 식량주권과 선언에 담긴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먹거리 체계의 발전과 보호를 강조
 - *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역 및 국제 수준의 공공정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음

2. 유엔 농민권리선언을 통한 국제인권법 상의 권리 강화

기존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 상의 권리 재확인·강화

유엔 농민권리선언과 모두를 위한 물에 대한 권리(right to water for all)

- ① 선언문 21조는 중요한 경제적·사회적 권리 중 하나인 '모두를 위한 물에 대한 권리'를 강조
- ② 첫째,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한 깨끗한 식수와 위생 보장
- ③ 둘째, 영농, 어로, 목축 등 생산 활동을 위한 물과 물 관리 체계에 대한 접근 보장
- ④ 특히, "농촌의 여성과 소녀 및 유목민, 플랜테이션 노동자, 이민법상 신분과 상관없는 모든 이주민과 불안정하고 비공식적인 거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에 대한 물인권을 강조

2. 유엔 농민권리선언을 통한 국제인권법 상의 권리 강화

기존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 상의 권리 재확인·강화

유엔 농민권리선언과 건강권(right to health)

- ① 선언문 제23조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신체·정신적으로 가능한 최고의 건강상태"를 누릴 권리를 다루고 있음
- ② 이 건강권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시와 농촌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및 인프라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함
 - * ILO의 보고서에서는 1인당 건강을 위한 지출이 농촌에 비해 도시가 2배 크고, 세계적으로 농촌 인구의 절반이 응급 상황에서 돌봄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Scheil-Adlung, 2015)
 - * 근본적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국제적 접근이 지적재산권의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 ③ 선언문은 건강권에 대해 국가가 비차별 원칙에 기반해 접근할 것을 강조
 - * 농촌 지역의 보건 시설,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필수 의약품 보장 등이 비차별적으로 이뤄져야 함

2. 유엔 농민권리선언을 통한 국제인권법 상의 권리 강화

기존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 상의 권리 재확인·강화

유엔 농민권리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Civil and Political rights)

- ①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잘 담겨 있지만 선언문 제8조와 9조 등에서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다룸으로써 이들 집단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있음
 - * 제8조 1항, “의사표현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 * 제9조 1항,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집단 교섭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스로 선택한 조직 및 결사체를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 * 제10조 1항, “자신들의 삶, 토지 그리고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사업 또는 계획의 준비 및 시행 단계에서 직접 그리고/또는 대표 단체를 통해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 제11조 1항, “자신들의 상품의 생산, 가공, 판매 그리고 유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찾고, 받고, 발전시키고 나눌 권리”
- ② 요컨대 선언문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집회·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 뿐 아니라 농촌이라는 농민의 삶터, 일터에 영향을 주는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먹거리 체계와 관련한 결정에 직접 참여할 권리를 담고 있음

2. 유엔 농민권리선언을 통한 국제인권법 상의 권리 강화

기존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 상의 권리 재확인·강화

유엔 농민권리선언과 농촌 여성의 권리(rights of women in rural areas)

- ① 선언문은 농촌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지만 권리적 측면에서 특히 취약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
 - * 농촌에서 여성은 생계의 유지와 먹거리권 보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UN, 2016)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기아 인구의 70%가 여성이며 각종 폭력과 차별에 직면하고 있음
- ② 여성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과 유엔 농민권리선언
 - * 선언문의 제4조는 ‘여성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과 관련 유엔 결의에 기반해 여성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 * 특히, 거의 모든 나라에서 먹거리의 생산 주체로서 남성에 비해 심각한 차별을 받는 여성이 “토지 및 자연자원의 이용과 관리에 동등한 접근권, 토지개혁 및 농업자원과 체제개혁과 토지 재정착 정책에 있어 동등하게 또는 우선적으로 대우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중요함

3. 유엔 농민권리선언이 제시하는 새로운 권리

기존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이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권리의 제시

✎ 선언문은 기존의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이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특수성을 잘 다루지 못하는 부문에 대해서도 새롭게 권리를 제시하고 있음 (Golay & Bessa, 2017)

- ① 토지권(제17조), 종자권(제19조),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제16조)가 선언문이 새롭게 제시하는 대표적인 권리임
- ② 이들 권리는 기존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다른 문서에서 다뤄졌지만(Golay, 2013) 선언문에서는 권리담지자의 관점에서 이러한 인식을 확대하고 국가(의무담지자)의 세부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3. 유엔 농민권리선언이 제시하는 새로운 권리

기존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이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권리의 제시

✎ 유엔 농민권리선언과 토지에 대한 권리(right to land)

① 토지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

- * 토지 약탈(land grabbing), 토지 몰수(expropriation of land), 강제 퇴거(forced evictions) 및 이주(displacement)는 농민과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침(Human Rights Council, 2012)
- * 땅은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계에서 기본적인 수단임
- * 이와 같은 이유로 각국 및 국제 법제에서는 점차 토지와 여러 인권의 향유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는 추세에 있음(OHCHR, 2015)
- *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경우에 실질적이기 보다는 절차적이고 특정 범주에 한정되고 있음(FIAN, 2017)

3. 유엔 농민권리선언이 제시하는 새로운 권리

기존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이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권리의 제시

✍ 유엔 농민권리선언과 토지에 대한 권리(right to land)

① 농민권리의 핵심 요소로서의 토지에 대한 권리

- * 선언문 제17조는 주로 기존의 유엔 토착민 선언(UN Declaration on Indigenous Peoples), 여성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국가 먹거리 보장의 맥락에서 토지, 수산, 산림 보유권의 책임있는 정책에 관한 자발적 지침(Voluntary Guidelines on the Responsible Governance of Tenure of Land, Fisheries and Forests in the Context of National Food Security, VGGT) 등 세 가지 국제 문서에 기반하고 있음(FIAN, 2017)
- * 이 조항에서는 토지를 인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상업적 측면보다는 인간(생산, 생활 등)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

3. 유엔 농민권리선언이 제시하는 새로운 권리

기존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이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권리의 제시

✍ 유엔 농민권리선언과 토지에 대한 권리(right to land)

① 농민권리로서 토지에 대한 권리의 특징

- * 선언문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는 개인적 그리고/또는 집단적 본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됨
- * 이와 같은 인식은 많은 경우 토지를 집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농촌 사회에서 필수적인 것이며, 이러한 인식을 통해 집단적 권리 증진이 가능함

② 토지에 대한 권리의 범위

- * 토지에 대한 권리의 범위는 토지와 수자원, 연안해역, 어장, 목초지 및 삼림에 접근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관리할 권리로 규정됨
- * 또한 토지에 대한 접근, 활용, 관리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달성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아가 공간을 확보하며, 자신들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짐
- * 즉, 이러한 목적은 상업적 혹은 투기적 목적과 다르며 이에 근거해 국가는 정당한 권리담지자를 구별할 수 있음

③ 토지에 대한 권리와 국가의 의무

- * 국가는 정당한 토지 이용권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며, 적절한 경우 농업 개혁, 농생태 지원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함
- * 이 조항은 또한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이주 및 퇴거를 포함하여 국가가 금지해야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3. 유엔 농민권리선언이 제시하는 새로운 권리

기존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이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권리의 제시

✍ 유엔 농민권리선언과 종자에 대한 권리(right to seeds)

① 선언문의 종자에 대한 권리 규정

- * 선언문 제19조에서는 농장에서 저장한 종자 또는 번식 재료(propagating material)를 저장, 사용, 교환 및 판매할 권리와 자신의 종자 및 전통 지식을 유지, 통제 및 보호할 권리를 규정
- * 또한 이익 공유에 공정하게 참여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도 포함하고 있음
- * 이러한 조항은 기존의 국제 표준, 특히 농민의 권리를 인정한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 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3. 유엔 농민권리선언이 제시하는 새로운 권리

기존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이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권리의 제시

✍ 유엔 농민권리선언과 종자에 대한 권리(right to seeds)

① 인권으로서 종자권의 의미

- * 선언문에 종자에 대한 권리를 포함시킨 것은 자신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 체계 관련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는 농민에게 더 많은 보장을 제공할 수 있음
- * 선언문은 종자에 대한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함으로써 이 권리에 대한 상업적, 절차적 이해를 넘어 농민과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존엄에 대한 종자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조 (Golay & Bessa, 2019)

② 종자에 대한 권리와 국가의 의무

- * 선언문 19조 3-7항은 종자 권리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
- * 이 절에서는 농민 종자 체계(peasant seed systems)를 지원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요구
- * 또한 종자 정책, 연구, 식물 품종 보호 및 기타 지적 재산권 법률 및 인증 제도에서 농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고려하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음

3. 유엔 농민권리선언이 제시하는 새로운 권리

기존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이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권리의 제시

✎ 유엔 농민권리선언과 종자에 대한 권리(right to seeds)

① 종자권과 종자 다양성

- * 종자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보호는 종자 다양성을 증진에 기여
- * 농민 문화의 다양성에서 비롯된 다양한 종자는 세계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하고 급속한 변화에 대비하여 인류가 생존 가능한 미래를 위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선택(Esquinas, 2017)
- *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자 판매를 규제하는 법률의 주요 기준으로 권장되는 종자의 균일화(uniformization), 안정화(stabilization) 및 표준화(normalization)는 농민의 품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Correa, 2017)
- * 농민에 의한 수천년의 교환과 종자 선택으로 인류가 더 다양하고 저항성이 있는 작물 품종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음을 상기할 때 이와 같은 접근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매우 중요
- * 이와 관련하여 선언문은 보다 지속가능한 농업의 촉진과 생물다양성의 보존을 위한 각국 및 국제 정책과 규제의 지침이 되는 국제법의 확립에 기여

3. 유엔 농민권리선언이 제시하는 새로운 권리

기존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이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권리의 제시

✎ 적절한 생활수준과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right to adequate standard of living and to means of production)

① 선언문 제16조에서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생산도구, 기술 지원, 신용, 보험 및 금융 서비스 등 생산수단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고 규정

- * 이러한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과 관련해 △적절한 수입과 생계를 보장하는 가격, △생산물 판매를 위한 국내 및 지역 시장에서의 접근, △가공, 건조, 저장시설 이용, △지역경제의 보호·강화, △농생태적 유기농 생산 촉진, △농민과 소비자 간 직거래 촉진, △차별 없는 공정한 임금 등의 정책 수단을 제시하고 있음
- * 또한, 기후위기 등으로 늘어나는 재해 등에 대응해 “국가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연재해 및 시장실패와 같은 심각한 타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강화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



해외 각국 및 국제 이행 동향

1. 국제적 수준에서 유엔 농민권리선언의 이행 및 점검을 위한 과제

농민권리선언 이행 점검을 유엔 내에서 공식화하기 위한 방안

유엔의 인권 분야 이행점검체계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모든 UN회원국의 국내 인권상황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회원국 상호간의 심의(peer review) 형식으로 진행
국제인권조약 이행 심의	-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국가가 조약의 국내 이행 상황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조약기구에 제출하고, 조약기구가 정기적으로 당사국이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는 제도 - 우리나라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규약(사회권규약) 등 7개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하였음
특별절차	- 특별절차란 특정 인권주제 또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상황을 조사·분석하여 유엔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기구임 - 특별보고관, 실무그룹, 독립전문가 등 상이한 명칭을 사용하나, 기능 및 역할에 차이는 없음 - 우리나라는 특별절차에 대한 상시초청(standing invitation) 수락 국가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특별절차가 상시초청에 근거하여 우리나라를 방문조사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출하고 있음
개인진정절차	당사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선택의정서에 근거하여 개인이 직접 국제인권기구에 조사 등 조치를 요구하는 제도

자료: 법무부 홈페이지.

1. 국제적 수준에서 유엔 농민권리선언의 이행 및 점검을 위한 과제

농민권리선언 이행 점검을 유엔 내에서 공식화하기 위한 방안

유엔 농민권리선언 이행점검 체계 구축 과제 및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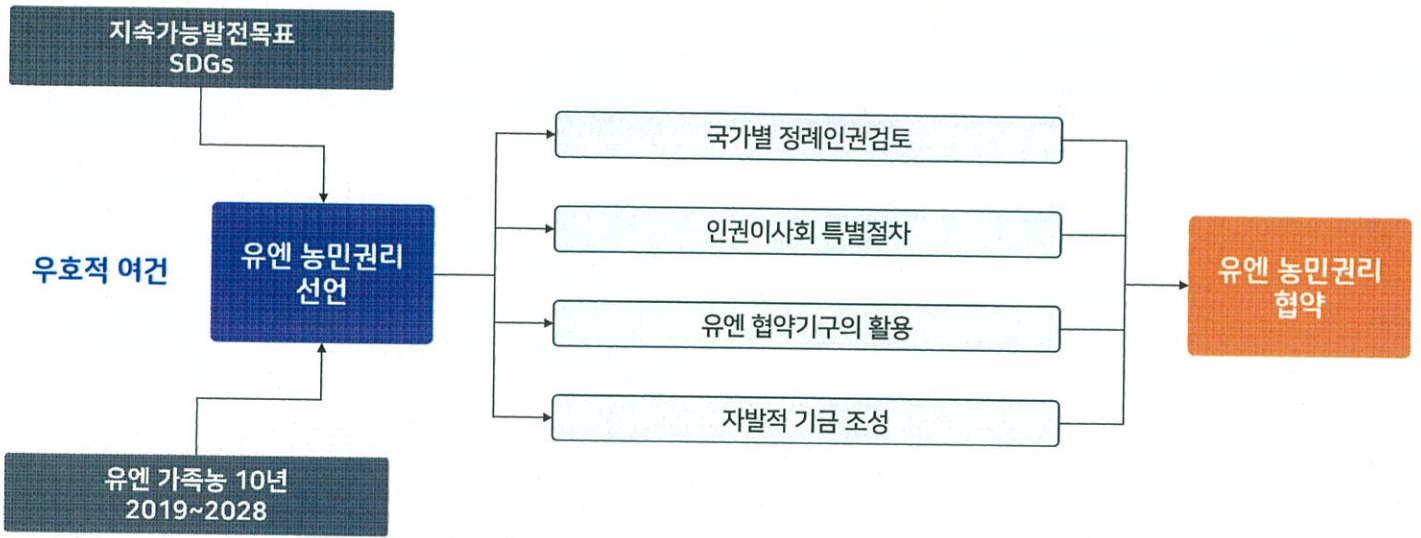


그림: Pacheco & Lozada, 2020; Rosales Lozada, 2021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1. 국제적 수준에서 유엔 농민권리선언의 이행 및 점검을 위한 과제

방안 ① :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의 활용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 유엔 농민권리선언 이행 점검 포함

- ① 유엔의 각국은 4년 단위로 정부부처,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단체의 협력과 공동참여를 통해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
- ② 우리나라의 경우 법무부의 총괄 하에 관계부처,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였고(2017년 3차 보고서), 이 보고서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심의 후 권고사항에 대해 다시 간담회를 진행하고(2018년 1월), 정부의 최종 입장 제출(2018년 2월)
- ③ 유엔 농민권리선언 채택 1주년을 맞이해 발표된 전문가들의 공동성명서에서 선언의 이행 점검 사항을 정례인권검토에 포함할 것을 주장

1. 국제적 수준에서 유엔 농민권리선언의 이행 및 점검을 위한 과제

방안 ② :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도입

유엔 농민권리선언 이행 점검 관련 인권위 특별절차 도입

- ①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도 중 하나인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는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이나 특정 주제에 관한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감시·연구 및 공개하는 것과 국제사회와 관련 국가에 조언 및 권고 등의 활동을 통해 특정 인권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국제사회와 관련 국가가 인권 상황을 개선 및 증진하도록 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
- ② 특별절차는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또는 보통 5명으로 구성된 실무그룹(Working Group)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특별절차수임자(Special Procedures Mandate Holder)에 의해 수행
- ③ 특별절차는 특정 조약에 권한이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들이 새로운 인권 문제를 강조하거나 제기하기를 원할 때마다 특별절차를 새로 수립하는, 일명 “선택의 메커니즘”으로 활용되고 있음

1. 국제적 수준에서 유엔 농민권리선언의 이행 및 점검을 위한 과제

방안 ③ : 유엔 인권 협약기구들의 활용

유엔 인권 협약기구들(treaty bodies)의 농민권리선언 수용 및 반영

- ① 유엔 체계에는 협약을 기반으로 한 기구들(예를 들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등)이 있으며 이들 기구는 협약당사국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협약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심의
- ② 이들 기구에서 협약 이행 점검에 유엔 농민권리선언 관련 사항을 포함하면 간접적으로 이행 점검 가능(최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토지에 관한 일반논평(general comment) 초안을 작성하고 있음)
- ③ 그 외에도 IMF, WTO,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등 국제기구들이 농민권리선언을 그들의 활동에서 고려하도록 해야 함

1. 국제적 수준에서 유엔 농민권리선언의 이행 및 점검을 위한 과제

방안 ④ : 자발적 기금 조성

자발적 기금(voluntary fund) 조성

- ① 유엔 토착민 선언 채택 후 협약이 아닌 선언은 별도의 이행 점검을 위한 기구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만들고 유엔 총회가 자발적 기금을 조성하여 토착민 대표자들의 활동을 지원
- ② 자발적 기금 조성을 통해 농민 대표자들이 유엔 체계의 회의와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

2. 농민권리선언 이행 노력의 해외 사례

유엔 농민권리선언 이행을 위한 해외 동향

기존의 정책과 제도를 농민권리의 관점에서 재평가

- 농민권리선언을 국가 단위에서 농업·먹거리 정책과 제도의 개혁, 그리고 더 나아가서 먹거리 체계의 전환(transformation of food system)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공동의 밑그림(common road map)으로 인식(Hubert, 2019)
-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실태,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 △농민권리선언과 관련해 정책의 점검(monitoring)에 책임이 있는 여러 정부 부처와 기관의 인식 제고, △독립적인 인권 기구(우리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부에 대한 권고 등 추진

농민권리선언을 정부의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

- 국가 단위에서 시급하고 쟁점이 되는 정책이나 제도와 관련한 개선을 시도
- 스위스의 사회운동이 무역, 종자와 생물다양성, 먹거리 시장 정책, 먹거리 체계 문제 등에 대한 농민권리 관점에서의 현실 진단과 정부에 대한 정책 권고 시도

민간 영역에서 기업의 책임성 요구

-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판매, 그리고 농업 노동이 이뤄지는 농촌의 곳곳에서 기업의 책임성과 관련해 농민권리선언 수용 요구

2. 농민권리선언 이행 노력의 해외 사례

FIAN International의 여성 공유 부엌

농촌 여성의 전환적 페미니스트 먹거리 정치 시도

- ① 남미에서 농촌 여성들은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공동체 부엌(조리장)에 모여 의견을 나누고 정치적인 저항 정신을 공유
- ②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착안해 유엔 농민권리선언과 여성차별철폐 협약 등 인권적 수단과 페미니즘, 그리고 먹거리와 영양이라는 공통 관심사로부터 시작해 정치 의제 준비하기 (cooking up political agenda)로 나아가는 활동 지침서 마련
- ③ 이는 권리기반, 참여적 실천을 통해 공정한 먹거리 체계를 위한 싸움에서 여성의 정치적 주체성을 인식하고 먹거리 정치의 공간을 마련하려는 일상 정치 운동

2. 농민권리선언 이행 노력의 해외 사례

FIAN International의 여성 공유 부엌

농촌 여성의 전환적 페미니스트 먹거리 정치 시도

COOKING UP
POLITICAL AGENDAS



2. 농민권리선언 이행 노력의 해외 사례

스위스의 농민권리선언 관점에서 정책 권고

✎ 농민권리의 관점에서 무역 정책, 농민 참여 정책, 종자 정책 개혁 권고

- ① 스위스에서는 2019년에 '농민권리선언 친구 연합(The Coalition of Friends of the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결성(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 ② 이 연합과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농민권리선언의 관점에서 주요 정책 개혁의 내용을 만들고 정부에 권고(Dommen & Golay, 2020)
 - * 스위스는 자국의 정체성을 소규모 영농의 나라로 인식하고 유엔 농민권리 선언의 채택에 적극적으로 활동
 - * 선언 채택 이후 이행의 단계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면서 농민권리선언의 관점에서 외교 정책의 개혁, 농민의 정책 입안 참여 보장, 자유무역 정책의 평가와 회복탄력성, 지속가능성 목표,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제 협약에 나설 것을 권고. 그 외에도 지식재산권과 종자권의 갈등 해소 정책 등을 제안.

2. 농민권리선언 이행 노력의 해외 사례

스위스의 농민권리선언 관점에서 정책 권고

✎ 스리랑카의 화학비료 및 농화학 투입재 수입 금지

- ① 스리랑카에서는 수입산 화학비료와 농화학 투입재(살충제와 제초제 등)의 과도한 사용으로 실명 등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출산, 신장 질환이나 암 발생 증가가 나타났음
- ② 이에 대통령과 농업부에서 수입 금지 조치를 2021-2022년 실시할 것을 결정
- ③ 농민권리의 관점에서 시작된 조치는 아니지만 토지 및 농업 개혁을 위한 운동(Movement for Land and Agricultural Reform)이 이 결정을 지지하고 유기농으로의 전환 계기로 삼으려는 흐름이 형성(3년 이내 30%의 농지와 작물에 유기비료 사용 목표)

2. 농민권리선언 이행 노력의 해외 사례

농민권리선언 채택 이전 식량주권 제도화의 시도

✎ 식량주권 제도화의 사례들

- ④ 농민권리 선언 채택 이전에도 식량주권, 종자권(GMO 금지), 농지에 대한 권리 등을 제도화 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음

제도화 경로	주요 사례
헌법 개정	• 에콰도르(2008) 헌법 13조 • 네팔(2008) 헌법 18조 3항 • 볼리비아 헌법(2009) 16, 255, 300, 302, 407조
법률 제정	• 브라질 법률 11.345, 먹거리 및 영양 보장을 위한 국가체계에 관한 법(2006) • 베네수엘라 농식품 보장 및 주권 기본법(2008) • 에콰도르 식량주권법(2009) • 니카라과 법률 163, 먹거리, 영양 주권 및 보장법(2009) • 인도네시아 법률 18/2012, 인도네시아의 먹거리 보장에 관한 법

3



최종보고회까지 연구 계획

제1장 서론

제2장 선언의 정책적·제도적 함의와 이행의 국제 동향

- ① 1. 유엔 농민권리선언 채택 과정
- ② 2. 유엔 농민권리 선언의 정책적·제도적 함의
- ③ 3. 유엔 농민권리 선언 이행의 국제 및 해외 각국 동향
- ④ 4. 소결

제3장 국내 농민권리 보장 정책 및 제도 검토

- ① 1. 농업·농촌·농민 관련 주요 법제도 평가 : 농민권리 선언의 관점에서
- ② 2. 농정의 틀 전환과 권리 접근
- ③ 3. 소결

제4장 유엔 농민권리 선언의 정책화·제도화 방향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농촌 산업단지·산업폐기물매립장 추진 관련 의견서(2021.10.5.)

지난 9월 2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민권리선언 포럼은 충북 괴산군 사리면에 추진 중인 ‘괴산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및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충북 진천군 이월면에 추진 중인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와 관련된 현장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로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산업단지 및 산업폐기물매립장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의견을 송부합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합니다.** 산업단지 추진을 명목으로 농업진흥지역이 대규모로 해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농민들의 생활기반으로 절대적으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간업체들이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인해, 농업진흥지역이 대규모로 해제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산업단지를 빌미로 농업진흥지역이 대규모로 해제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특히 현재 대규모로 절대농지가 훼손될 위험에 놓여있는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진천 테크노폴리스’와 관련해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 권고합니다.** 현재 산업단지가 농촌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농지와 임야 훼손을 낳을 뿐만 아니라, 낮은 실 입주율과 가동률로 인해 또 다른 문제를

낱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민간업체들과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하게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지역 내에서 심각한 갈등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가 무분별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산업단지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3. **환경부에 권고합니다.** 민간업체가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매립장을 패키지로 묶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폐기물매립장에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운영을 시작한 몇몇 지역의 산업폐기물매립장은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60%를 넘길 정도입니다. 이것은 소수의 업체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환경오염, 농업피해에 대한 농민들과 주민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들어선 산업폐기물 소각장으로 인해 심각한 주민생활피해를 호소하는 지역도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는 산업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산업폐기물매립·소각장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는 주체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오염과 주민생활피해, 농업피해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산업폐기물정책 전반을 재정립하기 바랍니다.

4. **충청북도에 권고합니다.** 충청북도 내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 소각장으로 인한 갈등과 주민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산업단지 추진으로 인해 대규모로 농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민간업체들과 협약을 맺으며 추진해 온 산업단지 확대정책이 농지훼손, 주민생활피해, 환경오염 우려, 지역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산업단지 확대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공무원을 동원하여 무리하게 산업단지, 산업폐기물매립장 사업을 밀어붙이지 않도록 감사권, 감독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5. 괴산군에 권고합니다. 괴산군수는 사리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사리면의 이장단이 사퇴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사퇴한 것은 사리면의 민심을 잘 보여주는 것이므로 괴산군수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사업을 강행하며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것은 지역 내의 갈등을 키울 뿐만 아니라, 풀뿌리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추진을 중단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길 바랍니다.

6. 진천군에 권고합니다.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진천군수는 지금이라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바랍니다. 특히 대규모 절대농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농민 권리선언’ 제10조에서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 토지 그리고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사업 또는 계획의 준비 및 시행 단계에서 직접 그리고/또는 대표 단체를 통해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수는 이런 유엔 차원의 권리선언을 존중하길 바랍니다.

농민권리선언포럼 제6차 회의(세계인권도시포럼식량권 세션) 개최(안)

□ 목적

-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먹거리 위기문제를 먹거리기본권과 농민권리의 관점에서 토론 및 대안 모색

□ 배경

- 감염병과 기후위기에 취약한 오늘날의 농업-먹거리 체계를 인권에 기반한 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재난 대응과정에서 먹거리기본권과 농민권리를 존중, 보호, 이행하는 국가적 의무 제언 필요

□ 개요

- 주제: 재난시대의 식량권(Right to Food), 그리고 농민권리
- 일시·장소: 2021. 10. 9.(토) 10~12시,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광역시)/영상병행
- 참석: 포럼 위원 등 50명 내외
- 주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공익법률센터 농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구분	시간	분	주요 내용	비고
개회	10:00~10:20	20	○ 개회 및 내외빈 소개 ○ 축사: 정현찬(농특위원장)	사회: 김정열 대표 (농특위 농민권리선언포럼)
좌장: 윤병선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대표				
발표	10:20~11:00	40	○ 세계위기 상황에서의 인권에 기반한 식량체계	발표: Michael Fakhri (미국, 유엔인권이사회 식량권특별보고관)
토론	11:00~11:50	50	○ 지정토론 - 먹거리기본권과 농민권리 보장을 위한 한국의 운동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 송원규 부소장) - 여성농민 권리의 현재와 이후 방향(농식품부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 - 농민권리의 제도화 현황과 과제(농특위 박경철 포럼위원) - 광주전남지역 농민의 권리현황(전여농광주전남연합 김원숙 사무처장) - 기후위기와 먹거리(기후행동비전네트워크 조길예 대표)	
	11:50~12:00	10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폐회	12:00		○ 종합정리 및 기념촬영	사회: 김정열 대표